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)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

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를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실적관리 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내용을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

사업 실적관리를 위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제9조의2(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)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경력관리 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.

1. 증명사진(3.5센티미터×4.5센티미터)
2. 국가기술자격증
3.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4.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5. 교육·훈련 이수증 사본 1부

②광해방지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

2.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

3.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
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자가 영 별표 1의 광해방지기술인에 해당하면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광해방지기술인이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제3항에 따른 발급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법 제44조”를 “법 제44조제1항”으로, “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”를 “수수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본문 중 “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이”를 “제1항과 제2항에 따라”로, “등의”를 “등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이”를 “제1항과 제2항에 따라”로, “등의”를 “등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”로 한다.

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

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6호의5서식 까지
및 별지 제7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
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전문분야 구분	등록번호	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	업체명 :
[]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 [] 토양개량·복원 및 정화 [] 오염수질개선 []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[] 광물찌꺼기 유실방지	[] 먼지날림, 광연 및 소음 진동 방지 [] 광해방지사업 감리		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
			소재지(전화번호) :

(1) 일련 번호	(2) 사업 구분	(3) 계약명	(4) 전문 분야	(5) 사업개소					(6) 발주처	(7) 입찰형태	(8) 계약 연월		(9) 착수 연월		(10) 완료 연월		(11) 사업규모		(12) 총사업금액						(13) 관급자재액							
				시·도	시·군·구	읍·면	리·동	번지			연	월	연	월	연	월	수량	단위	백억	십억	천만	백만	십만	만	천	백억	십억	천만	백만	십만	만	천
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유의사항

1. (2) 사업구분은 공사,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2. (3) 계약명은 계약을 체결한 사업명을 적습니다.
3. (4) 전문분야는 영 별표 2에 따른 전문분야를 적습니다.
4. (7) 입찰형태는 일반경쟁, 지명경쟁, 제한경쟁, 수의계약,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5. (11) 사업규모는 사업종류를 고려하여 ha, m², 개소, km 등으로 사업을 계약한 물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.
6. (12) 총사업금액은 관급자재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.

297mm×210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

1. 업체개요

업체명				대표자	
등록번호		등록일		전문분야	
소재지				전화번호	

2.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

일련 번호	구분	사업명 또는 계약명	사업기간	사업규모 (단위)	사업비 (백만원)	발주처 (인허가기관)
			~			
			~			
			~			
			~			
			~			

3. 참여기술인 현황

일련 번호	구분	성명	생년월일	기술 등급	참여기간	비고
					~	
					~	
					~	
					~	
					~	

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발주처의 장 직인

첨부서류	광해방지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구분란은 법 제11조 각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종류를 적습니다.
 - 사업명 또는 계약명란은 발주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명칭을 적습니다.
 - 사업기간란은 실제로 사업을 착수한 후 종료한날까지의 기간을 년, 월,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.
 - 사업규모란은 실적이 있는 수량에 따른 단위를 같이 적습니다.
 - 사업비란은 관급자재대 등을 포함한 최종 실적(준공)금액을 적습니다.
- 참여기술인 현황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구분란은 책임기술인/현장대리인/참여기술인/작업원/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 - 기술등급란은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을 적습니다.
 - 참여기간란은 기술인이 실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연월일로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번호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업체명	대표자		
	전문분야	등록번호		
	소재지			(전화번호:)
신청 부수				
신청 내용				
신청 사유				

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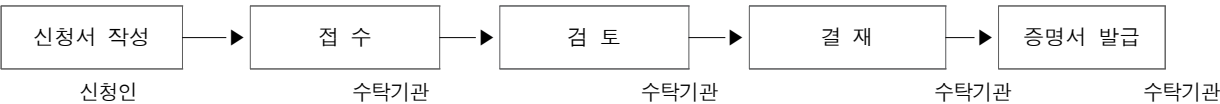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실비의 범위에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수수료
------	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작성 방법

- 발급번호란은 수탁기관에서 적습니다.
- 신청 내용란에는 발급받으려는 실적의 내용을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

신청인	전문분야(등록번호)	
	업체명	대표자
	소재지 (전화번호:)	

실적증명 내용(총 건)						
연번	사업명	사업개요	계약기간	계약금액 (백만원)	참여기술인 (책임·분야별 책임자 성명)	발주처명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
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위와 같이 광해방지사업실적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수탁기관의 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

[illegible]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※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즉시		
신청인	성명	한글	주민등록번호		증명사진 (3.5cm×4.5cm)			
		한자						
		영문			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			
	전자우편주소		국적					
	주소							
근무처	회사명(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)			전화번호		입사일		
기술분야				전문분야				
학력	재학기간		졸업 학교명		학과(전공)		학위	
	. . . ~ . . .							
	. . . ~ . . .							
기술자격	합격일		종목 및 등급			등록번호		
	. . .							
	. . .							

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본인)

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증명사진(3.5센티미터×4.5센티미터) 1장 2.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.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.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[발주자 또는 사용자(대표자)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]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. 교육·훈련 이수증 사본 1부 *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.	수수료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			
1. 신청인(본인)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「형법」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			
2.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.			
대리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연락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

(앞쪽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실명확인	처리기간	즉시
인적사항	① 성명 (서명 또는 인)		주민등록번호	
	전자우편주소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
	② 주소			
소속회사	③ 업체명	대표자	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④ 등록번호		
	⑤ 입사일	⑥ 퇴사일	전화번호	
기술경력				
연 번	⑦ 사업 기간 및 참여 기간	⑧ 참여 사업명		⑨ 발주자(청)
	⑩ 사업종류	⑪ 전문분야	⑫ 담당 업무	⑬ 직위
	⑮ 사업 개요(70자 이내 공란 포함)			
	~.....			
	~.....			

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발주자 또는 사용자(대표자)

직인

유의사항

- 2장 이상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각 장에 발주자 또는 사용자(대표자)의 확인(간인 포함)을 받아야 합니다.
- 대리인 작성 시 작성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.

대리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연락처
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작성방법

1. ①란의 (서명 또는 인)에는 광해방지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「형법」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2.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(변경 요청)이라고 기재합니다.
3.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(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)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, 상호가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(명칭 변경) 또는 (흡수합병) 중 어느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.
4. ④란의 등록번호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5.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.
6.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말하며, 현재 근무 중인 경우 "근무 중"으로 기재합니다.
7. ⑦란의 사업 기간은 해당 사업의 착수일~준공일을 기재합니다. 사업 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2021. 1. 1. ~ 2021. 5. 31., 2021. 9. 1. ~ 2021. 12. 31. 과 같이 기재합니다. 참여 기간은 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으로 참여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은 사업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.
8.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광해방지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계약 또는 실적신고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.
9. ⑨란의 발주자는 해당 광해방지사업을 발주한 기관명 ·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.
10. ⑩란의 사업종류는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.
11. ⑪란의 전문 분야는 산림 및 토지복구, 토양개량·복원 및 정화, 오염수질개선,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, 광물찌꺼기유실방지, 먼지날림, 광연 및 소음·진동방지, 광해방지사업감리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.
12. ⑫란의 담당 업무는 사업총괄 책임자, 분야별 책임자, 현장대리인, 참여기술인, 작업원,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13. ⑬란의 직위는 해당 사업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기재합니다.
14. ⑭란의 사업비는 광해방지기술인이 참여한 사업비 금액을 기재하고,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.
(예시) 사업비: 1,000(백만원)
15. ⑮란의 사업 개요는 광해방지기술인이 참여한 공사 또는 용역 규모 등을 적고,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.
※ 사업 개요는 주요 내용만 최대 70자 이내(공란 포함)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
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※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즉시	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		
	전자우편주소	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
	주소						
변경사항							
[] 근무처	전 소속회사	회사명(대표자)			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
		주소			등록번호		
		입사일		퇴사일	전화번호		
	현재 소속회사	회사명(대표자)			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
		주소			등록번호		
		입사일			전화번호		
[] 기술자격		변경 전			변경 후		
[] 학력		변경 전			변경 후		
[] 경력		변경 전			변경 후		
[] 교육·훈련		변경 전			변경 후		

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(본인)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	수수료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
유의사항			
1. 신청인(본인)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「형법」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2.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.			
대리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연락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

(앞쪽)

발급번호	NO.		회원번호	NO.		
인적 사항	성명(한글)		(한자)		생년월일	
	주소					
기술등급	기술분야		전문분야			
국가 기술자격	종목 및 등급		합격일	등록 번호	종목 및 등급	합격일
학력	졸업일		교육기관명		학과(전공)	
교육훈련	교육기간		교육기관명		과정명	
제재사항	제재일	종류		근거		제재기관
근무처	근무기간		상호		근무기간	
	~				~	
	~				~	
	~				~	
	~				~	
	~				~	
	~				~	
	~				~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주요 경력

연 번	사업기간(일수)	사업명			발주자
	참여기간(일수)	사업 종류	전문 분야	담당업무	직위
	사 업 개 요				사업비 (백만원)
	~ (일)				
	~ (일)				
	~ (일)				
	~ (일)				
	~ (일)				
	~ (일)				
	~ (일)				
	~ (일)				
	~ (일)				
	~ (일)				

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광
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수탁기관의 장 직인

유의사항

본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술인 또는 소속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즉시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전자우편주소	
	주소	
소속 회사	업체명(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)	전화번호
발급 사유		
발급 번호		

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본인)

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수수료	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
-----	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			
1. 신청인(본인)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「형법」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			
2. 대리인이 신청·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(수령인)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.			
대리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연락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)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 총괄표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를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실적관리 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이 경우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내용을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

<신 설>

③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실적관리를 위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제9조의2(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)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경력관리 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.

1. 증명사진(3.5센티미터×4.5센티미터)
2. 국가기술자격증
3.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4.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및 해당

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5. 교육·훈련 이수증 사본 1부

②광해방지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

2.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

3.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
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자가 영 별표 1의 광해방지기술인에 해당하면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광해방지기술인이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

제13조(수수료) ①법 제44조에 따
른 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
다)는 영 제37조에 따른 조사기
 관 및 검사기관(이하 “조사기관
 등”이라 한다)이 광해의 확인,
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범위의 확
 정을 위한 조사, 광해방지사업
 을 위한 현지조사, 광해방지시
 설의 검사와 광해방지시설의 정
 상가동 여부 및 오염도조사 등
 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
 산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
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이
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
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

제7호의7서식의 광해방지기술
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제3
항에 따른 발급내용을 기록하고
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수료) ①법 제44조제1항
 --- 수수료-----

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수
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광해
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 관리
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
산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
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----

있도록 조사기관 <u>등의</u>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이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조사기관 <u>등의</u>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	----- <u>등 및 경력관리</u> <u>수탁기관의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---- ----- ----- -- <u>등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</u> -----.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63